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형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441

발의연월일: 2025. 1. 10.

발 의 자:최형두・이종욱・엄태영

서범수 · 김성원 · 박충권

송석준 · 조인철 · 최수진

김예지 • 윤영석 • 조정훈

박성민 · 신성범 · 안철수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데이터는 핵심적인 생산요소로 평가되고 있고,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이용자 맞춤형 서비 스 제공 등 이용자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.

그러나 데이터 경쟁의 심화로 특정 사업자를 중심으로 데이터가 집 중될 경우 이는 신규 사업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고, 장기 적으로 혁신과 경쟁 및 이용자 권익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.

이에 이용자 수,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하여 데이터 접근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1호 및 제42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1호 본문 중 "데이터·영상 등을"을 "데이터(「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·영상 등을"로 한다.

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2조의2(데이터 제공요구)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 수,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 자(이하 이 조에서 "정보제공사업자"라 한다)에 대하여 데이터를 공 정하고 차별적이지 않은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정보제공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. 다만, 정보제공사업자 본인 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 제공의 범위와 조건·절차·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다.
 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제공사업자의 데

이터 제공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10. (생 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11. "기간통신역무"란 전화·인	11
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· <u>데</u>	<u>म</u>]
<u>이터 · 영상 등을</u> 그 내용이나	이터(「데이터 산업진흥 및
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	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」 제
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	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
및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	한다. 이하 같다) · 영상 등을
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	
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	
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. 다만,	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	
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	
스(제6호의 전기통신역무의	
세부적인 개별 서비스를 말한	
다. 이하 같다)는 제외한다.	
12. ~ 17. (생 략)	12. ~ 17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42조의2(데이터 제공요구) ①
	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 수,

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 전기통신사업자(이하 이 조 에서 "정보제공사업자"라 한다) 에 대하여 데이터를 공정하고 차별적이지 않은 조건으로 제 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정보제공사업자는 이에 따라야한다. 다만, 정보제공사업자 본인 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 제공의 범위와 조건·절차·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.
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제공사업자의 데이터 제공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있다.